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2018누51982]

사 건 명 :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 원고1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원고보조참가인 : 원고2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피 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 론 종 결 : 2018. 11. 22.

판 결 선 고 : 2018. 12. 13.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 해양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선박이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어업활동을 하였다거나 망인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